

의안 번호	제3623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7월 2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산업현장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여, 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근로자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외국인 고용 환경 실태조사(안 제5조)
- 다.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안 제6조 제3항은 지원 대상 면에서 다른 조항들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,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, 해당 항을 삭제하고자 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제출안 1부, 수정안 1부

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외국인근로자”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
2.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
3. 외국인근로자의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
4. 외국인근로자의 법률·노무·취업·행정 등 상담 및 통·번역 지원
5.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편의 제공사업

6.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

7.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·기업·사업장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·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·수강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)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(“이하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협력체계)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62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7.
제출자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6조 제3항은 지원 대상 면에서 다른 조항들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,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, 해당 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

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출 안	수 정 안
<p>제6조(지원사업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③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·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·수강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지원사업) ①·②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